

**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**  
(이원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13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6. 29

발 의 자 : 이원욱 · 김영진 · 강훈식  
권칠승 · 홍의락 · 백혜련  
김병기 · 안호영 · 조경태  
전현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재 전기판매자의 전기공급과 관련하여 발전원별로 구분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기사용자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구분하여 구매할 수 없는 실정임.

이에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임을 증명하는 증서와 함께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4항, 제16조의5, 제19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제5호).

##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5644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4항 중 “기본공급약관”을 “기본공급약관 및 제16조의5제4항에 따른 녹색전력요금약관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5(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등)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(이하 “재생에너지”라 한다)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.

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임을 증명하는 증서 등을 전기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는 연간 구매목표량 등을 세워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판매에 따른 전기요금 및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(이하 “녹색전력요금약관”

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 
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⑤ 제4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.

제19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16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구매  
하려는 전기사용자

제56조제1항제5호 중 “제16조 및 제16조의3에”를 “제16조·제16조의3  
및 제16조의5에”로, “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”를 “기본공급약  
관·보완공급약관 및 녹색전력요금약관의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법률 제15644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</p> <p>제16조(전기의 공급약관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<u>기본공급약관</u> (이하 “공급약관”이라 한다)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추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법률 제15644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</p> <p>제16조(전기의 공급약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u>기본공급약관</u> 및 제16조의5제4항에 따른 <u>녹색 전력요금약관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6조의5(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등)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(이하 “재생에너지”라 한다)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</u></p>

따라 전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임을 증명하는 증서 등을 전기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는 연간 구매목표량 등을 세워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판매에 따른 전기요금 및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(이하 “녹색전력요금약관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⑤ 제4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.

제19조(전력량계의 설치·관리) ①  
다음 각 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9조(전력량계의 설치·관리) ①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<p>1. ~ 4. (생략)  <u>&lt;신설&gt;</u></p> <p>5. (생략)  ② (생략)</p> <p>제56조(전기위원회 기능) ①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~ 15. (생략)  ② (생략)</p>	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4의2. 제16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려는 전기사용자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 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6조(전기위원회 기능) ① --  -----  ----- 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제16조·제16조의3 및 제16조의5에-----  -----기본공급약관·  보완공급약관 및 녹색전력요  금약관의-----</u></p> <p>6. ~ 15. (현행과 같음)  ②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